

# 변경 대비표

2023.09.20

○ 펀드명 : 흥국글로벌이노베이션증권투자신탁1호(H)[주식-재간접형]

○ 정정사유 :

- 1)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 2) 법 개정사항 반영
- 3)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

○ 상세내역 :

**[집합투자규약]**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b>제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b>	법 개정사항 반영	①(생 략)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생 략)	①(현행과 같음)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u>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u>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수행한다.  ③(현행과 같음)
<b>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b>	법 개정사항 반영	①(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재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5. (생 략) ③(생 략)	①(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재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5.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b>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b>	법 개정사항 반영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

		<p>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u>1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⑤(생략)</p>	<p>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u>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u>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u>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②~⑤(현행과 같음)</p>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법 개정사항 반영	<p>①(생략)</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3.~5. (생략)</p> <p>③~⑪(생략)</p>	<p>①(현행과 같음)</p> <p>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u>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u>)</p> <p>3.~5. (현행과 같음)</p> <p>③~⑪(현행과 같음)</p>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p>1)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p> <p>2) 법 개정사항 반영</p> <p>3)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p>	<p>[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비용</li> <li>- 투자실적추이</li> <li>- 운용전문인력</li> </ul> <p>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li> <li>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운용전문인력</li> </ul> </li> <li>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lt;별첨&gt;</li> <li>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 기타 투자위험</li> </ul> </li> </ul>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p>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1. 재무정보</p> <p>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p> <p>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p> <p>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 운용자산 규모</p> <p>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p> <p>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 임의해지</p> <p>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p>		
<p><b>제2부.</b> <b>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b> <b>8.</b> <b>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b> <b>가. 투자대상</b></p>	<p>법 개정사항 반영</p>	<p>※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①~⑤(생략)</p> <p>[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p> <p>※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①~⑤(생략)</p>	<p>※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3호 및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①~⑤(현행과 같음)</p> <p>[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대상]</p> <p>※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6호 내지 제8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①~⑤(현행과 같음)</p>
<p><b>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b> <b>다. 기타 투자위험</b></p>	<p>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p>	<p>&lt;신설&gt;</p>	<p>[증권대차 거래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초과수익 전략의 일환으로 증권대차거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차거래는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거래로 시장상황에 따라 이러한 거래로 인해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증권대차거래 이후,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p>

			등으로 인해 대차증권의 상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미상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대차거래를 위해 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가치가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에서 정한 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주 5)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0.94%]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은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5)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의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예상 총보수 비율은 연간 [0.81%]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타비용은 제외)로 추정하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법 개정사항 반영	4)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4) 종류C-p, 종류C-pe, 종류S-p 수익증권 가입자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납입요건</td> <td>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td> </tr> <tr> <td>세액공제</td> <td>[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납입요건</td> <td>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간 1,800만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td> </tr> <tr> <td>세액공제</td> <td>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간 1,800만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세액공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단,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1. 연간 1,800만원 2.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세액공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														

		<p>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p> <p>[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b>분리과세 한도</b></p>	<p>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 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p>	<p>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li> <li>2.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li> <li>3.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li> </ol> <p>단, 연간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가능(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적용)</p>								
	<p><b>연금외 수령시 부득이한 경우</b></p>	<p>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 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p>	<p>-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시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 결의, 파산선고</p>								
	<p>5) 종류C-p2, 종류C-P2e, 종류S-pr 수익증권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td> <td>-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p>5) 종류C-p2, 종류C-P2e, 종류S-pr 수익증권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의 세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세액공제</td> <td>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p>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p>※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p> <p>※ 퇴직연금종합안내(<a href="http://pension.fss.or.kr">http://pension.fss.or.kr</a>)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3.2%(또는 16.5%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 공제 단, 퇴직연금계좌 새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p> <p>※ 연금 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a href="https://100lifeplan.fss.or.kr">https://100lifeplan.fss.or.kr</a>)의 '연금세제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제4부. 집합투자 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p> <p>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p> <p>가. 회사의 개요</p>	<p>업데이트</p>	<p>KIS채권평가(주)</p>	<p>KIS자산평가(주)</p>
<p>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p> <p>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나. 임의해지</p>	<p>법 개정사항 반영</p>	<p>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1)~2) (생략)</p> <p>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p>	<p>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p>

		<p>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5) (생략)</p>	<p>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5) (현행과 같음)</p>
<p><b>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b></p> <p><b>나. 수시공시</b></p>	<p>법 개정사항 반영</p>	<p>2) 수시공시</p> <p>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① (생략)</p> <p>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p> <p>③~⑦ (생략)</p> <p>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⑩~⑪ (생략)</p>	<p>2) 수시공시</p> <p>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p> <p>③~⑦ (현행과 같음)</p> <p>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p> <p>⑩~⑪ (현행과 같음)</p>

**\* 별첨**

주1)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2)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집합투자기구 정기결산에 따른 정정	[요약] - 투자비용 - 투자실적추이 - 운용전문인력		